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세부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림청	작 성 자	이름	이은경
	담당부서 (과)	사유림경영소득과		직급	임업주사보
	국장	이미라		연락처	042-481-8885
	과장	조영희		이메일	eungeoung@mail.go.kr

2020. 8. 18. 작성

산림산업정책국장

이미라 (이은경)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세부기준								
	2.규제조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3.위임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08.21 ~ 2020.10.0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산림경영 교육·훈련등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 5. 26. 공포, '20. 11. 27. 시행) ○ 이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취소하거나 시정명령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								
	7.규제내용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세부기준 신설(안 제7조의2제7항)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전문교육기관</td><td>28개 기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문교육기관	28개 기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문교육기관	28개 기관								
9.규제목표	산림경영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⑥ (생 략) <u><신 설></u>	제7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⑥ (현행과 같음) <u>⑦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 5. 26. 공포, '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기준 마련
- (개입 필요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교육·훈련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는 등 전문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내용) 전문교육기관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세부기준을 마련
- (선택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6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입법례를 참조하여 대안 내용 마련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⑥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별표 4의2]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12조의3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지정취소 등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관련법규	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의4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1조의4 제4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청장의 자료요구 또는 현장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1조의4 제4항제3호	경고	시정명령	지정취소
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4항제4호, 영 제4조의5 제5항제1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마.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4항제4호, 영 제4조의5 제5항제2호	경고	시정명령	지정취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전문교육기관(28개 기관)	처분기준 완화 요청	반영 불가(유사입법례를 통해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마련하였으며, 경중에 따라 충분한 시정 기회 제공)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의견 없음	-

3. 규제목표

- 산림경영 교육·훈련등을 실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내실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다른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하였으므로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없음
네거티브리스트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⑥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별표 4의2]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12조의3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지정취소 등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관련법규	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의4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1조의4 제4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청장의 자료요구 또는 현장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1조의4 제4항제3호	경고	시정명령	지정취소
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4항제4호, 영 제4조의5 제5항제1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마.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당시 제출한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4항제4호, 영 제4조의5 제5항제2호	경고	시정명령	지정취소

III.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통해 운영현황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 이상)되면 다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는 산림청장이 청문을 거쳐 직접 수행하므로 행정적으로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시정 명령에 대해서는 재정소요를 수반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관계부처 의견조회('20.7.30~8.10) : 의견 없음
- 이해관계자 의견조회('20.8.4~8.14) : 처분기준 완화 요청

2. 향후 평가계획

-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정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 행위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 등 조치

3. 종합결론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 5. 26. 공포, '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교육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전문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 임업인 등 교육·훈련생의 교육 만족도가 제고할 것으로 기대